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8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전진숙
조정식 · 김남희 · 전종덕
박희승 · 서영석 · 장종태
김정호 · 소병훈 · 한정애
남인순 · 허성무 · 이개호
박 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방임·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

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가 있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한다.

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보호시설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임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

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에게 임시 후견인의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5항에 따라 임시 후견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후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후견인)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3조(후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가 있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후견인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 ~ 3. (생 략)	<u>을 변경할 수 있다.</u> ⑥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보호시설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임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u> ⑦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에게 임시 후견인의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⑧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5항에 따라 임시 후견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	--